

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07
----------	-----

2023년 7월 5일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3. 5.30.
2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3. 회부일자 : 2023. 6. 1.
4. 상정일자 :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(2023. 6.27.)
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(2023. 6.30.)
 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 - 원안가결

Ⅱ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조정실장)

- 의안번호 제901호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(안) 등 15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(안)에 대한 제안설명과 동일

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907호, **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2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) 제안이유

- 가.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인하여 기금 수입계획이 변경되고,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어르신 돌봄 시범사업 도입,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사업 확대 및 변경으로 인하여 기금 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) 주요내용

- 가. 2023년 수입계획 상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에 따라 예치금 회수금액이 당초 878백만원에서 984백만원으로 106백만원 증가됨
- 나. 2023년 지출계획 상 정책사업비에서 비용자성 사업(스마트 돌봄을 위한 시범사업) 782백만원, 융자성 사업(어르신 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 및 운영지원)

230백만원이 증가하였음. 이에 따라 예치금 금액이 1,430백만원에서 524백만원으로 906백만원 감소하였음

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- 수입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천원, %)

장/관/항/목	당 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합 계	1,738,987	1,845,474	106,487	6.1
세외수입	291,442	291,442	-	-
경상적세외수입	16,993	16,993	-	-
이자수입	16,993	16,993	-	-
공공예금이자수입	16,993	16,993	-	-
임시적세외수입	274,449	274,449	-	-
기타수입	274,449	274,449	-	-
그외수입	274,449	274,449	-	-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1,447,545	1,554,032	106,487	7.3
보전수입등	877,641	984,128	106,487	12.1
예치금회수	877,641	984,128	106,487	12.1
예치금회수	877,641	984,128	106,487	12.1
내부거래	569,904	569,904	-	-
예탁금및예수금	569,904	569,904	-	-
예탁금이자수입	569,904	569,904	-	-

- 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천원, %)

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	당 초 (A)	기금운용계획 변경안 (D)	증 감 (E=D-A)	증 감 률 (F=E/A)
합 계	1,738,987	1,845,474	106,487	6.1
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	305,800	1,318,800	1,013,000	331
어르신의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 지원	40,000	40,000	-	-
어르신 정보화 교육	40,000	40,000	-	-
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(307-11)	40,000	40,000	-	-
디지털 돌봄 역량 강화 추진	-	300,000	300,000	순증
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 탁사업비 (308-11)	-	300,000	300,000	순증
스마트 노인복지관 조성	-	450,000	450,000	순증
민간위탁사업비 (402-03)	-	450,000	450,000	순증
스마트장비 연계 재가어르신 복약정서 지원	-	33,000	33,000	순증
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(307-11)	-	33,000	33,000	순증
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 자금 융자 및 운영 지원	100,000	330,000	230,000	230
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(307-11)	100,000	330,000	230,000	230
어르신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	97,000	97,000	-	-
시설종사자 역량강화	97,000	97,000	-	-
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(307-11)	97,000	97,000	-	-
저소득 어르신의 자활지원	68,800	68,800	-	-
어르신 주거지원	68,800	68,800	-	-
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(307-11)	68,800	68,800	-	-
재무활동	1,430,187	523,674	△906,513	△63
보전지출	1,430,187	523,674	△906,513	△63
여유자금 예치	1,430,187	523,674	△906,513	△63
행정운영경비	3,000	3,000	-	-

3. 검토의견

-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'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 1억 600만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(1억 600만원)에 반영하고,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'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'(10억 1,300만원)를 증액하고 예치금(△9억 600만원)을 증·감조정하는 등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¹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-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①정책사업인 **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**를 당초 지출계획보다 331.2%, 10억 1,3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고, ②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△63.3% △9억 600만원 감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
- 아울러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'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'에 10억 1,3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는 것으로 **디지털 돌봄 역량강화 추진(3억원)**, **스마트 노인복지관 조성(4억 5,000만원)**, **스마트장비 연계 재가어르신 복약·정서지원(3,300만원)**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, **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용자 및 운영 지원(2억 3,000만원)**은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는 것으로서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 사업 / 단위 사업 / 세부 사업	당 초 (A)	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지 출 합 계	1,738	1,845	106	6.1
어르신복지 수준 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	305	1,318	1,013	331.2
어르신의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지원	140	1,153	1,013	
어르신 정보화 교육	40	40	-	-
디지털 돌봄 역량 강화 추진	-	300	300	
스마트 노인복지관 조성	-	450	450	
스마트장비 연계 재가어르신 복약·정서 지원	-	33	33	
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 및 운영 지원	100	330	230	230.0
어르신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	97	97	-	-
저소득 어르신의 자활 지원	68	68	-	-
일 반 예 산 (재 무 활 동)	1,430	523	△906	△63.3
보 전 지 출	1,430	523	△906	△63.3
여 유 자 금 예 치	1,430	523	△906	△63.3
행 정 운 영 경 비 (복지 정책 실 어르신 복지 과)	3	3	-	-

※ 자료근거 :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지출계획,
 ②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('23. 5.30) 재구성

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²⁾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○ 다만, 우리 시의회는 지난해 12월16일 「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」을 의결한 바,³⁾

- 동 계정의 단위사업중 **어르신의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지원**의 경우, 지출액을 1억 4,000만원으로 의결하였음에도 제출된 운용계획변경안중 해당 단위사업의 지출액은 4,000만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, 증감, 증감률 모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됨
- 시의회에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지출계획의 변경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 지출액의 변동추이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나, 부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의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데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부정확한 내용이 기재된 것에 대해 별도 설명이 필요한 것은 물론 주의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

2)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제5조(노인복지계정)

② 노인복지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
2. 노인단체 지도·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
3.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
4. 노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
5.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
6. 저소득노인의 자활 지원
7. 노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
8. 노인교육사업
9. 민간의 창의적인 노인복지사업 발굴지원
10.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3) ① 의안번호 : 379

② 안건명 :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

③ 안건제출 : 2022.11. 1

④ 심사경과 : 수정가결 (2022.12.16)

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 (제출된 내용, 오류 수정전)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 사업 / 단위 사업 / 세부 사업	당 초 (A)	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어르신의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지원	40	40	-	-



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 (오류 수정후)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 사업 / 단위 사업 / 세부 사업	당 초 (A)	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어르신의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지원	140	1,153	1,013	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VI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

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2.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

1) 소위원회 구성

- 일 자 : 2023. 6.27.(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)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(의회별관 2층)
- 위원구성 :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(11명)
 - 위 원 장 : 이성배(주택공간)
 - 부위원장 : 강동길(주택공간), 김영옥(보건복지)
 - 위 원 : 송경택(행정자치), 김지향(기획경제),
이영실(환경수자원), 이종배(문화체육관광),
박철성(도시안전건설), 김영철(도시계획균형),
김용일(도시계획균형), 경기문(교통)

2)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

○ 제1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3. 6.29.(목) 14:00 ~ 16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안 등 조정 소위원회 운영

○ 제2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3. 6.30.(금) 12:00 ~ 13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안 등 조정 소위원회 운영

VII. 부대의결 : 「생략」

VI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2023. 6.30.)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90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5월 3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인하여 기금 수입계획이 변경되고,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어르신 돌봄 시범사업 도입,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사업 확대 및 변경으로 인하여 기금 지출계획이 변경되어
- 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23년 수입계획 상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에 따라 예치금 회수금액이 당초 878백만원에서 984백만원으로 106백만원 증가됨
- 나. 2023년 지출계획 상 정책사업비에서 비융자성 사업(스마트 돌봄을 위한 시범사업) 782백만원, 융자성 사업(어르신 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 및 운영지원) 230백만원이 증가하였음. 이에 따라 예치금 금액이 1,430백만원에서 524백만원으로 906백만원 감소하였음

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- 수입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천원, %)

장/관/항/목	당 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합 계	1,738,987	1,845,474	106,487	6.1
세외수입	291,442	291,442	-	-
경상적세외수입	16,993	16,993	-	-
이자수입	16,993	16,993	-	-
공공예금이자수입	16,993	16,993	-	-
임시적세외수입	274,449	274,449	-	-
기타수입	274,449	274,449	-	-
그외수입	274,449	274,449	-	-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1,447,545	1,554,032	106,487	7.3
보전수입등	877,641	984,128	106,487	12.1
예치금회수	877,641	984,128	106,487	12.1
예치금회수	877,641	984,128	106,487	12.1
내부거래	569,904	569,904	-	-
예탁금및예수금	569,904	569,904	-	-
예탁금이자수입	569,904	569,904	-	-

- 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천원, %)

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	당 초 (A)	기금운용계획 변경안 (D)	증 감 (E=D-A)	증 감 률 (F=E/A)
합 계	1,738,987	1,845,474	106,487	6.1
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	305,800	1,318,800	1,013,000	331
어르신의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 지원	40,000	40,000	-	-
어르신 정보화 교육	40,000	40,000	-	-
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(307-11)	40,000	40,000	-	-
디지털 돌봄 역량 강화 추진	-	300,000	300,000	순증
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 탁사업비 (308-11)	-	300,000	300,000	순증
스마트 노인복지관 조성	-	450,000	450,000	순증
민 간 위 탁 사 업 비 (402-03)	-	450,000	450,000	순증
스마트장비 연계 재가어르신 복약·정서 지원	-	33,000	33,000	순증
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(307-11)	-	33,000	33,000	순증
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 자금 융자 및 운영 지원	100,000	330,000	230,000	230
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(307-11)	100,000	330,000	230,000	230
어르신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	97,000	97,000	-	-
시설종사자 역량강화	97,000	97,000	-	-
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(307-11)	97,000	97,000	-	-
저소득 어르신의 자활지원	68,800	68,800	-	-
어르신 주거지원	68,800	68,800	-	-
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(307-11)	68,800	68,800	-	-
재무활동	1,430,187	523,674	△906,513	△63
보전지출	1,430,187	523,674	△906,513	△63
여유자금 예치	1,430,187	523,674	△906,513	△63
행정운영경비	3,000	3,000	-	-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사전협의 완료

라. 기 타 : 2023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완료(원안가결)

※ 작성자 :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박부경 (☎2133-7407)